

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

[시행 2013.7.19.] [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923호, 2013.7.19., 일부개정]

강북구 (자치행정과) 901-6097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시상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7.6.20, 2010.4.30, 2012.6.22>

**제2조(수상 대상)**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(이하 "구민대상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구민이거나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(모범기업인상만 해당),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(사회복지상만 해당)으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사회발전 및 아름다운 내 고향을 가꾸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<개정 1997.6.20, 단서신설 1997.11.25, 개정 2012.6.22, 2013.7.19>

**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** 구민대상은 선행봉사상, 모범가족상, 문화예술상, 체육상, 모범기업인상, 사회복지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1997.6.20, 2004.12.17, 2010.4.30, 2012.6.22, 2013.7.19>

**제3조의2(심사기준)** 제3조의 종류별 심사기준은 각 호와 같다.

1. 선행봉사상은 자기를 희생하여 선행을 실천하고,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
2. 모범가족상은 애항심이 돈독하고 웃어른을 극진히 모시며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등 화목한 가정으로 이끈 경우
3. 문화예술상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 문화예술 증진에 헌신하여 구 문화수준 향상에 공헌한 경우
4. 체육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엘리트 체육인의 후원·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경우
5. 모범기업인상은 구에서 모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구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우
6. 사회복지상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[본조 신설 2012.6.22, 전문개정 2013.7.19 ]

**제4조(시상 시기)** 구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한다. <개정 1997.6.20, 2012.6.22, 2013.7.19>

**제5조(상패, 부상 등)** ①수상자에게는 상패,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1997.6.20>

②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 <개정 1997.6.20, 2010.4.30, 2013.7.19>

**제6조(위원회)** 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1997.6.20, 1997.11.25, 2012.6.22>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.<개정 2012.6.22>

③ 위원은 구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및 구 공적심사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<개정 1997.11.25, 2012.6.22>

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1997.11.25, 2012.6.22>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1997.11.25, 개정 2012.6.22>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대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 <신설 1997.11.25, 개정 1998.9.24, 2000.12.1, 2007.7.6, 2012.6.22>

-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1997.11.25>
- ⑧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1997.11.25, 개정 2012.6.22>
- ⑨ 위원회는 회의록(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내용)과 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9>

**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
  2.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
  3.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.[본조 신설 2012.6.22, 전문개정 2013.7.19]

**제6조의3(위원의 해촉)**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2. 직무대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
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4.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[본조 신설 2013.7.19]

**제7조(수상 후보자 추천)** ①구민은 10명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(동장, 파출소장, 학교장 등)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. <개정 1997.11.25, 1998.9.24, 2012.6.22>

②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1997.11.25>

**제7조의 2(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)** ①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구 감사담당관이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,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서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2.6.22>[본조신설 1997.11.25]

**제8조(수상자 결정)**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. <개정 1997.11.25>

**제9조(이중 시상의 금지)** ①이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<개정 2012.6.22>

②<삭제 2012.6.22>.[본조신설 1997.11.25]

**제10조(상의 대리수상)**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을 수 있다.[본조신설 1997.11.25]

**제11조(수상자의 사후관리)** ①수상 구민에 대하여는 구정보고, 산업시찰,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 우대한다.<개정 2012.6.22>

②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[본조신설 1997.11.25]

**제12조(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1997.11.25]<개정 2012.6.22>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6.20, 1997.11.25, 2012.6.22>